

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재무관리학회 간의 양해각서

한국산업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과 한국재무관리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는 한국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양해각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재무관리학회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, 금융 관련 공동연구, 컨설팅을 통해 한국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의 범위)

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컨설팅 등으로 한다.

1. 산업 및 기업분석
2. 기업의 자금조달 및 운용
3. M&A 및 기업구조조정
4. 금융상품 및 자본시장
5. 리스크 관리
6. 컨설팅 지원
7. 기타 “은행”과 “학회”가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

제3조(비밀유지)

양 당사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 및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관할법원이나 감독기관의 요구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4조(유효기간 및 해지)

- ①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각 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, 어느 일방이 본 양해각서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 서면으로 본 양해각서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- ② 양 당사자는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양해각서를 중도 해지할 수 있다.

제5조(권리·의무의 승계)

본 양해각서 체결 후 각 당사자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인수합병 등에 의해 당사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 승계인은 본 양해각서에 따른 권리·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로 한다.

제6조(변경)

- ①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양해각서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.
② 본 양해각서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하여, 변경의 효력은 그 서류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최종 기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.

제7조(기타)

본 양해각서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및 내용, 협력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며, 협력사업에 따라 별도의 세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가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2년 8월 22일

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

한 국 산 업 은 행

자 본 시 장 본 부 장

한 대 우

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7

한 국 재 무 관 리 학 회

회 장

정 성 창




